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

제정 2011.08.10.
개정 2016.11.03.
개정 2017.03.09.
개정 2017.12.14.
개정 2018.06.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순천제일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명칭) 본 과정은 순천제일대학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하 “전공심화과정”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모집단위) ①전공심화과정은 대학내에 설치된 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②전공심화과정의 설치학과는 당해 학년도 설치 인가 기준에 의하되, 학과 명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모집인원 및 학급편성) 당해연도 대학 전문학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의 20%이내로 하고, 모집단위별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0% 이내로 모집한다.

제5조(동일계열 범위) 전공심화과정에 있어 동일계열 범위는 교육부령 동일계열 관련학과 및 관련직업분야 분류표 기준에 따르며,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정한다.

제2장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구성) ①전공심화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편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생략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원자의 자격요건중 심의가 필요한 사항

3. 매학년도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사항
4. 전공심화과정 졸업생의 교육만족도 조사 사항
5. 기타 학위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9조(수업연한) 전공심화과정의 설치학과별 수업연한은 1년~2년으로 한다.

제10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학년·학기·수업·휴업일

제11조(학년) 학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학기) ①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2학기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이전에 개강할 수 있다.

②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학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수업일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4조(수업)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Cyber 교육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 운영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휴업일) ①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개교기념일
2. 일요일
3. 국정공휴일

②하계 및 동계방학 기간은 매 연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장 입 학

제16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도 개시일 이전으로 한다.

제17조(입학자격) ①(산업체 경력있는)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동일 전공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문대학 등 입학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이거나 전문대학 등을 전년도에 졸업한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자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②(산업체 경력없는)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동일 전공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제18조(입학지원절차)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입학원서를 작성한 후 총장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모집기간 동안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입학전형) 매 학년도 신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20조(입학허가) ①입학은 학사운영처장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②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등록과 수강신청

제21조(등록) ①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22조(수강신청) ①수강신청은 매 학기 소정기간에 하여야 한다.

②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7장 교육과정 및 교과이수

제23조(교육과정편성) ①현장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며, 전문학사과정의 교육과 연계된 전공심화교육에 중점을 두어 편성·운영한다.

②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편성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

제24조(교육과정) ①교육과정은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으로 구분한다.

1. 교양과정 : 관련학과 교양과목으로 구성
2. 전공과정 : 전공심화과목으로 구성

제25조(교과이수단위) ①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16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학점인정) ①전문학사과정 이수학점의 인정은 80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개정 2018.06.15.>
 ②전문대학과정 이외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동법률 시행령, 동법률 시행규칙 등에 의하여 이수한 학점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정한다.

제8장 시험 및 성적

제27조(평가시험) ①모든 교과목은 매학기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평가를 부과할 수 있다.
 ②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할 시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내규에 의한다.

제28조(성적) ①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 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9장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

제29조(학위과정 이수학점) 전공심화과정의 최소이수학점은 전문학사과정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30조(학위의 종류) 우리 대학이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와 각 과정별 학위명은 학칙에 따른다.

제31조(학위수여) ①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30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는 학사 학위 증서를 수여한다.
 ②학위는 학년도 말에 수여한다. 다만, 학위수여 요건에 달하는 자가 추가로 생긴 때에는 학기말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10장 학적관리

제32조(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입학한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와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③ 휴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되며,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4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국내 다른 대학(교)에 이중 입학한 자
3.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못한 자
4.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자
5. 품행이 불량하거나 신체허약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35조(학칙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 학칙 및 학사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